

의안번호	2210163
의 퇴 인	안태준의원
회 답 일	2025. 5. 15.
추계번호	25C265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조의2 (가족친화를 위한 다자녀 가정 차량 구입비 지원)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가 승차정원이 6명 이상인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면서 그 자녀 중에 13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되어 있는 자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4조의2 (가족친화를 위한 다자녀 가정 차량 구입비 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개정안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면서 그 자녀 중에 13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되어 있는 자가 6인용 이상 자동차 구입시 그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을 예상할 수 있음
 - 다만,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수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지원 기준이

나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지원 금액을 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¹⁾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전기차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국비를 최대 300만원(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 중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3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다자녀 양육자 중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3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2.31.>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4.12.31.>

(이하 생략)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